

4-9	남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 제정 및 운영									
이행단계	임기구분		사업주체			신규여부		사업기간		
정상추진	임기내	임기후	국가	시	구	신규	계속	단기	중기	장기
	○				○	○		○		

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남구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·지원하기 위한 「대구광역시 남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」 제정 필요

1 배경 및 목표

□ 배경

-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(사회복지협의회)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남구사회복지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□ 목표

- 민선8기 임기내 대구광역시 남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 제정 완료

2 추진계획

□ 대구광역시 남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 제정

- 조례 제정 목적
 -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예산지원 근거마련
 -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·단체와의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
- 조례 제정 추진
 - 현재 상위법(사회복지사업법) 일부개정 진행 중(이명수 국회의원 22.6.15 발의 / 개정내용 :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근거 명확화 등)
 - 법률 개정완료 후 2023년 상반기 중 조례(안) 마련 및 제정 추진

○ 조례 내용

- 목적, 구청장의 책무, 예산지원 등
- 지원사업(사회복지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정책 건의, 사회복지 관련기관·단체 간의 연계·협력·조정,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·협력 등)

※ 보조금 지원: 추후 시비 보조 등 별도 논의 필요

연차별 추진일정

세부사업별	추진사항	2022		2023				2024				2025				2026		비고	
		3	4	1	2	3	4	1	2	3	4	1	2	3	4	1	2		
남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 제정	조례제정																		

연차별 소요예산: 비예산사업

3 공약달성 확인지표

세부사업	구분	2022	2023	2024	2025	2026
남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 제정	확인지표	-	조례제정			
	목표(%)	-	100			

4 타기관 협조사항 (중앙정부, 대구시 등)

보건복지부

- 상위법(사회복지사업법) 개정
 -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지원 근거 명확화

대구광역시

- 광역 및 구 사회복지협의회 간의 역할 조정
 - ‘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’와 ‘시·군·구 사회복지협의회’ 간의 지위 및 역할 분담, 운영지원에 대한 사항 명확화
- 남구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한 시비 보조

5 기대효과

-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, 연구 및 소외계층 발굴
-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
- 민관협력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

주관부서	행복정책과	행복정책과장 김봉수	복지기획팀장 강재국	담당 박준우 ☎ 664-2543
협조부서	기획조정실	기획조정실장 이승원	평가규제팀장 김현정	담당 진지현 ☎ 664-2142